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평가를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연구분위기 진작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전임교원(계약제 및 특수신분교원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전임교원의 승진, 재임용, 교원연봉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2.12.21>

제3조(평가내용) 교원업적은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소요기간 내의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4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연구업적(논문 등)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12월 31일까지의 논문(작품 등)으로 한다.<조개정 2015.10.1>

제5조(영역별 배점) 평가주기 동안의 재임용 및 업적평가에서 차지하는 영역별 통산점수는 제31조에 의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업무) 교원업적평가에 관련된 총괄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7.09.25>

제7조(평가절차) 교원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대상 전임교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업적보고서 [별첨 1]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업적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업적의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교원이 진다.<개정 2017.09.25>
2. 기획조정처는 접수된 업적보고서의 업적을 확인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7.09.25>
3.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기획조정처를 통하여 해당교수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개정 2017.09.25>
4.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상교원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또는 재심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총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5일 이내에 재심을 회부한다.
6. 교원업적재심위원회는 재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재심 결과를 기획조정처를 통하여 해당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5>
7. 기획조정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송부한다.<개정 2017.09.25>

제3장 교원업적평가방법

제8조(교육업적평가) ① 교육업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강의, 실습 및 실기),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의 업적을 말한다.

② 교육업적평가 기간 중 해외파견 및 연구년제에 포함된 교수는 해당기간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연구업적평가) 연구업적은 교수의 해당 전공학문에 대한 저서, 논문, 논문발표, 수상, 특허, 연구보고서, 외부연구과제수탁 등 제반 연구 활동의 업적을 말한다.

제10조(봉사업적평가) 봉사업적은 교수가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 사회 및 교내에 전문적 지식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기여하는 일체의 봉사활동의 업적을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학교발전에 대해 말한다.

제10조의2(기여도평가) 기여도 평가는 소속 학과(교양대학원)의 신입생총원율, 재학생총원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조신설 2015.1.13>

제11조(배점기준과 평가방법) 영역별 평가대상,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 내지 [별표 5] 에 의한다.<개정 2015.1.13>

제1절 교육업적

제12조(교육업적평가기준) 교육업적평가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수업활동으로 구분하되, 모든 자료는 1년 혹은 학기단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3조(수업활동) ① 수업활동영역은 강의보조 자료의 개발 및 활용, 강의시수, 강의일수, 성적평가의 다양성, 성적정정, 비학점교육, 학생지도 활동, 협동교육의 실시, 강의계획 및 평가이행여부 등을 포함한다.

② 영역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보조 자료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배점기준은 1개 강좌 이상 강의 보조자료 개발 및 활용에 한하며 강의안, 비디오, 컴퓨터프로그램, CD, 슬라이드, OHP, 인터넷홈페이지 활용, 파워포인트 등 자료를 개발하여 강의했을 경우 평가를 부여한다.
2. 강의시수에 대한 배점기준은 책임시수를 강의할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초과한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시수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3. 강의일수에 대한 배점기준은 책임시수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3일을 기준으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초과 및 미만일 경우 점수 또는 감점한다. 단, 수강신청차 미달로 인한 폐강은 감점하지 않는다.<개정 2015.1.13>
4. 성적평가다양성은 중간, 기말, 수시시험 및 출·결석자료 활용, 과제물, 발표 및 토론, 퀴즈 등 3개 이상 활용을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5. 성적정정에 대한 교원의 책임부분에 한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6. 비학점교육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에 한하여 평가한다.
7. 학생지도활동은 학생지도 상담 및 학생동아리 지도 등 학생활동 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평가한다.
8. 협동교육의 실시는 산학협력교육실시 또는 외부인사 초청세미나 개최 및 스터디그룹 지도 등에 한하여 평가한다.<개정 2021.6.2>
9. 강의계획 및 평가이행여부는 강의계획의 배부 및 이행, 강의평가실시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학기말 강의평가점수를 반영한다.<호신설 2019.1.23.>
11. 강의개발은 기존강의와 중복되지 않은 신규강의 개발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온라인 강의나 K-MOOC 등 공개강의에 대한 평가점수도 반영한다.<호신설 2019.1.23.>
12.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평가점수는 교수법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신규교수법 제안 등에 대해 평가한다.<호신설 2019.1.23.>

제2절 연구업적

제14조(계열구분) 연구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문계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학문적 특성상 소속학부(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인문사회계열
- ② 예·체능계열
- ③ 자연계열

제15조(연구업적 평가기준) 연구업적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논문, 저서, 학술발표, 외부수탁연구, 수상 및 특허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연구부분 평가점수 적용 시 연차평가에서는 2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승진 및 재임용평가 시에는 2년을 기준으로 최대 400점을 인정한다..<개정 2013.12.4><개정 2015.1.13>

제16조(논문) 논문은 국내·외 논문, 평론 및 번역논문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문학술지는 SCI급 학술지를 말한다.
2. 국내 전문학술지 및 대학교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와 본교에서 인정한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21.6.2>
3. 평론, 번역논문은 학술적 성격을 띤 것을 말한다.

제17조(저서) 저서는 전문학술서, 대학교재(교과서포함), 전문분야번역서, 사전(단독제작), 문예창작집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서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하며, 저서 개정판은 기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개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분야번역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전공분야의 번역서를 말한다.
3. 문예창작집은 일반출판사나 기타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분야의 종합지 및 학술지에의 작품, 평론 등을 말한다.
4.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문예창작집을 묶어 편저자나 공동저작자로 출판한 서적을 말하며, 대학교양교재를 포함한다.

제18조(학술발표) 학술발표 용어의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주제발표는 국내외에서 개최학술회의에서의 기획주제의 발표를 말한다.
2. 자유발표는 국내외에서 개최된 주요학술회의에서의 자유발표를 말한다.

제19조(수상) 수상은 국외학술상과 국내학술상, 그리고 기타 수상으로 구분하되 용어의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학술상은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로 인하여 국제학술단체로부터 수여된 상을 말한다.
2. 국내학술상은 국내의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체로부터 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상을 말한다.
3. 기타 학술상은 국내외 학술상을 제외한 기타 단체로부터 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상을 말한다.

제20조(특허) 특허는 국제발명특허와 국내발명특허 그리고 실용신안특허 및 의장권 특허로 구분한다. 단, 특허와 실용신안 및 의장권은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그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 특허의 특허권자나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외부 학회 또는 단체로부터 수탁된 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결과물로서 국가기관연구보고서, 정부투자기관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연구보고서, 그리고 기타 연구보고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22조(외부연구과제 수탁) 외부연구과제수탁은 연구간접경비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평가한다.

제23조(공동연구 배점)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대해서는 2인(70%), 3인(50%), 4인(30%), 5-9인(20%), 10인 이상(10%)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제24조(예·체능계 연구업적) 예·체능계 연구업적은 [별표 3]의 연구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3절 봉사업적

제25조(봉사업적 평가기준) 봉사업적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교내활동, 학술단체활동, 대외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기간 내에 겸직의 경우 상위직만 인정한다.

제26조(교내활동) 교내활동은 보직의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봉사활동은 개월 수로 평가한다.<개정 2004. 8>

1. 대학원장, 처장은 1개월 당 2.5점으로 부여한다.
2. 부처장, 실장, 부속기관장, 사업단장은 1개월 당 2점으로 부여한다.
3. 학부장은 1개월 당 1.5점으로 한다.
4. 대학원·학부 전공주임교수, 학과장은 1개월 당 1점으로 한다.
5.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1개월 당 0.5점으로 부여하되, 각종위원회 위원이란 본교 규정상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6. 교외 지원사업 및 교내 프로젝트 참여는 지원사업 수탁 사업비와 프로젝트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점수를 부여한다.

제27조(학술단체활동) ① 국제주요 학술단체의 임원 및 국제학술회의 진행 등으로 구분하여 배점을 부여한다.

② 국내주요 학술단체의 임원 및 국내학술회의 진행 등으로 구분하여 배점을 부여한다.

제28조(대외활동) 대외봉사는 국제기구 위원과 국가위원, 외부특강 및 기고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기업 및 문화예술관련 심사위원 등에 따라 분류하며 봉사활동은 횟수로 평가하되 여러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는 합산을 할 수 있다.

제29조(수범사항) 수범사항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상벌사항, 수범사항 및 그밖에 교육·연구·봉사업적에 속하지 않으나 교위를 선양하는 등 그 업적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제29조2(상벌사항) 상벌사항은 포상(국가 상훈법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법인이사장 및 총장표창 등)과 징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절 기여도평가

제29조의3(기여도평가) ① 기여도 평가는 개인평가, 학과(교양·대학원)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학과평가는 교원의 소속 학과에 대한 평가로 [별표5]에 의거 공통으로 적용하되, 취업률 평가는 [첨부1]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교양평가는 교양학과 교수에 대한 평가로 [별표5]에 의거 교수 개인별로 적용한다.

④ 대학원평가는 학과가 없는 대학원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로 소속 대학원의 실적을 [별표5]에 의거 평가한다.<조선설 2015.1.13>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3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 교내학술연구비 지급규정 등에 명시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② 업적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교수에게는 총장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연봉제는 업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재임용 및 승진 심사 활용) ① 재임용 및 승진심사 세부 업적평가 항목과 배점은 연차평가와 동일하게 [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

② 재임용 및 승진대상 교원의 업적 평가점수 충족여부는 제4조에 의해 매년 평가한 업적평가의 누적 점수로 하며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및 승진심사는 해당년도 이전(해당년도 제외)에 취득한 최근 누적점수로 심사하며, 최대 6년(휴직 교원은 별도 적용)을 초과 할 수 없다.(단, 승진 심사(평가)시 휴직 교원에 관해서는 휴직 기간만큼 심사 및 평가 기간을 연장한다.)<조개정 2015.10.1.><개정 2021.06.2>

제5장 우수교원의 선정 및 지원

제32조(기본원칙) 매년도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 등이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33조(선정기준) 우수교원은 심사년도 기준으로 계열별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써 그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은 자를 선정한다.

제34조(절차) ① 업적평가 위원장은 매 학년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을 교직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직원인사위원회는 추천된 교원의 평정 및 기타 사항을 심의하고 선정한다.

제35조(보상 및 예우) ① 우수 교원에게는 업적 우수 교수상을 시상하며, 선정된 익년도에 한하여 연구년제, 연봉제, 연구비 지급 등에 있어 우선 배정 등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통산 3회 우수교원에게는 그 직위 및 승진 연한에 관계없이 정년보장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6조(비밀유지) 교원업적평가보고서와 업적평가 심사과정 및 결과 등은 대외비로 관리되며, 평가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목적 외에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4)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8)

1. 200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2002년 이후 실시하는 업적평가부터는 연구업적 영역점수는 승진대상기간에 걸쳐 통합 적용한다.

부 칙(2002. 8. 1)

1.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3년 4월 1일 이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

1.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04년 10월 1일자 승진임용대상자는 기존 규정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② 본 규정 제3조 제2항은 2004년 10월 1일자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5. 1)

1.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1] 교원연구업적평가항목 배점표(교육부분 : 계열공통)의 적용은 2006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1. 13)

1.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1] 교원연구업적평가항목 배점표(봉사부분 : 계열공통)의 적용은 2007년 3월 1일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 22)

1.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1] 교원연구업적평가항목 배점표(봉사부분 : 계열공통)의 적용은 2007년 3월 1일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 30)

1.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1] 교원연구업적평가항목 배점표(봉사부분 : 계열공통)의 적용은 2008년 3월 1일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1] 내지 [별표4]의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의 적용은 2009년 3월 1일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5]의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의 적용은 2013년 9월 1일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5]의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의 적용은 2014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

[별표 1] 교원 교육업적평가항목 및 배점표(교육부분 : 계열공통)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수업 활동	강의보조 자료의 개발 및 성적다양성/강의계획·평가이행여부	o 성적평가 3가지이상 활용 o 담당과목 강의계획 제출 o 학기당 20점	40	200	* 충족시 점수인정(성적 평가 다양성, 강의계획제출) - 1개강좌당 성적평가 3가지 이상 부족 : -0.5점 - 담당과목강의계획서 1개강좌당 미제출 : -0.5점 * 교학지원처 확인
	강의시수	o 책임시수 기준 : 학기당 20점	40		* 교학지원처 확인
		o 초과 1시간당 가점 : 학기당 최대 6점	+2		* 수강자 미달로 인한 폐강일 경우 가점 없음
		o 미달 1시간당 감점	-2		* 강의시수가 부족한 교수가 학교의임시,홍보,정책등 학교업무를 수행할시 책임(강의일수)시수 인정
	성적정정	건당 -3점	-12		* 교수의 책임부분만 적용
	비학점교육	1) 학생 작품의 전시·논문·연주·공연 발표 지도 실시 2) 교내·외 문화행사(전시·공연·연주)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교수 3) 졸업 작품(전시/연주/공연)·논문지도교수 4) 공인된 국제대회 지도학생의 작품, 실기 발표대회 참가 및 수상 5) 팀티칭	70		* 건당 10점 * 공인된 국제대회 학생 수상 : 건당15점 * 졸업 작품·논문 지도 - 학 부 : 지도학생 1명이상시 인정 - 대학원 : 지도학생 1명이상시 인정 * 교학지원처에 비학점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서류 제출 부분만 인정
협동교육실시		o 산학협동교육실시(외부초청세미나 개최) o 스터디그룹 지도 실시	30	* 건당 15점 * 스터디그룹 지도는 실시 및 결과보고 서류 제출 부분만 인정	
학생지도활동	o 학생 상담 지도(상담일지) o 학생동아리 지도(활동사진 등)	20	* 학기당 10점 * 예비동아리 지도 포함		

- * 전임교원의 협동(업적강좌는) 책임시수 초과 시 1시간당 2점을 가점하되 학기당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이경우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 협동(업적)강좌는 업적평가 점수 반영 시 교육부분(수업활동, 학생지도활동 및 학부 경쟁력 확보)의 통합점수에 가점하되, 교육부분 통합점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 * 협동(업적)강좌 과목은 담당교수가 매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지원처에서는 업적평가의 과목 및 시수 등을 기획조정처에 제출하여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2] 교원 연구업적평가항목 및 배점표(연구부분 : 계열공통)<개정 2021.6.2.>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300	200	*SCI급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	200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술지(후보지 포함)
	대학교 논문집 및 심사제도가 정립된 대학교 연구소 논문집	100		*게재예정인 논문
	기념논문집 및 기타 논문집 포함	50		
	전문학술지 논평·서평, 전문종합 잡지 및 기타	40		
저서	전문 학술저서, 전문분야 번역서, 대학교재(교과서포함), 문예창작집, 사전(단독제작)	200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물 *대학교재 : 순수연구목적의 저서로서 국회도서관에 납본 완료 저서 *대학교재 : 지원사업 및 본교활용 목적 교재	
	대학교재(교과서포함)	100		
	편저서, 저서 개정판(1/3 이상개정), 주석판, 교열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집	50		
학술발표	학술회의 발표(Proceeding)	40		
외부수탁연구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연구간접경비 10만원당 2점)	200	*기획조정처 확인	
	연구보고서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연구간접비 10만원당 2점)	200	*연간통합 200점
		지방자치단체기타(연구간접비 10만원당 2점)	200	*연간통합 200점
수상 및 특허취득	수상	국외학술상	100	*국외학술단체 주관
		국내학술상	40	*국내학술단체 주관
		기타	20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이상
	특허	특허권 취득	200	
		실용신안권 취득	100	
	의장권 취득	50		

- * 박사학위논문 : 전국규모 전문학위학술지 점수 인정
- * 본부 보직자(처·실·원장)는 재임(6개월 이상)시 연구업적 인정. 단, 재임 6개월 이하는 연구업적 50% 인정
- * 저서에는 전자출판(e-book)도 포함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

[별표 3] 교원연구업적평가항목 및 배점표(연구부분 : 예·체능계열)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음악분야	-공인된 세계적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에서 주연공연 -공인된 국제 경연대회에서 입상	300	200	*공인된 세계적 교향악단, 오페라단, 공연단 음악제는 별도로 정한다.
	-국내·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독주회, 독창회, 개인작곡발표회 -지휘, 오페라에서의 주연, 1인 작품집,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외 수상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및 전국규모 콩쿨 대상 수상	200		*작곡발표 : 관현악곡, 협주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뮤지컬 *지휘 : 프로그램 전체 참여
	-협연(Concerto),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전체 참여 -2~3인 Joint Recital, 2인 작품집 및 음반 출간 -작곡발표 중 10인 이상을 위한 실내악 -독주·독창 전체프로그램 반주	100		
	-국내·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주연·조연 출연 -지휘 일부 참여, 오페라의 조연, 4인 이상의 Joint Recital -작곡발표 중 10인 이하의 실내악 및 가곡, 반주(Accompaniment) -3인 이상 작품집 및 음반 출간 -전체 음악회 프로그램에서 일부 프로그램 연주	40		*복합연주회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200점

- * 음악분야 순회공연은 1회에 한하여 70%만 인정함.
- * 공연카달로그 및 공연확인서 증빙 제출시 인정
- * 뮤지컬분야 공연의 경우 1공연 1작품 중 상위점수만 인정
- * 공인된 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문화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 포함)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뮤지컬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연단(연극,뮤지컬)에서 주연공연, 안무·연출·영상·예술·음악감독 및 시나리오	300	200	*공인된 국제적 공연단은 별도로 정한다.
	-국내·외공인된 공연장에서의 공연(연극,뮤지컬) 주역 -기획·연출·대본·영상·예술·음악감독 및 시나리오(장편) -1인 작품집 출간, 공인된 국내·외 수상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200		*기획, 연출 및 대본 : 프로그램 전체참여
	-국내·외 공인된 공연장에서의 2~3인공연(전) -국내·외공인된 공연장에서의 공연(연극,뮤지컬) 조연 -전국규모의 대회에서의 입상이상, 지방규모의 대회에서의 대상 -영상·예술·음악감독 및 시나리오(중편)	100		
	-공인된 국내·외 공연에서 조연출/각색 및 단체 공연 -공인된 전국규모의 연극제·뮤지컬제 참가 및 지도 -영상·예술·음악감독 및 시나리오(단편)	40		*단체전의 합산평균 연간 상한선 : 200점 *공인된 국내·외의 단체전은 별도로 정한다.

- * 공연카달로그 및 확인서 / 관중증빙 ※ 순회공연은 1회에 한하여 70%만 인정
- * 뮤지컬분야 공연의 경우 1공연 1작품 중 상위점수만 인정
- * 공인된 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문화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 포함)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미술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에서의 초대개인전	300	200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국내·외 수상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및 전국 규모의 공모전(협회전)에서의 대상	200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15점 이상 작품출품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인된 수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별도로 정한다.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전 또는 3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지방규모의 공모전(협회전)에서의 대상	100		* 2~3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8점 이상 작품 출품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인된 국내·외의 단체전 출품 및 지도자 참가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의 입선, 지방규모의 공모전(협회전)에서의 특선 이상	40		* 단체전 합산평균 연간 상한선 : 200점 * 공인된 국내·외의 단체전은 별도로 정한다.

- * 미술분야 순회전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 * 전시카달로그(전시전체작품수) 및 전시확인서 증빙 제출시 인정
- * 공인된 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문화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 포함)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

[별표 3] 교원연구업적평가항목 및 배점표(연구부분 : 예·체능계열)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연극 영화 상 분야	공인된 국제적 연극단에서 주연공연, 안무, 연출, 영상 감독 및 시나리오	300	200	*공인된 국제적 연극단은 별도로 정한다.
	-국내외 공인된 공연장에서의 공연, 기획, 연출, 대본, 영상 감독 및 시나리오(장편), 1인 작품집 출간 -공인된 국내외 수상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200		*기획, 연출 및 대본 : 프로그램 전체참여
	-국내외 공인된 공연장에서의 2인전 또는 3인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의 특선 이상, 지방규모의 대회에서의 대상, -영상 감독 및 시나리오(중편)	100		
	-공인된 전국규모의 연극제 참가및지도, 영상 감독및시나리오(단편) -공인된 공연장에서의 단체 공연 및 지도 또는 전국규모의 대회에서의 입선, 지방규모의 대회에서의 특선 이상	40		*단체전의 합산평균 연간 상한선 : 200점 *공인된 국내외의 단체전은 별도로 정한다.

- ※ 연극/영상분야 장편, 중편, 단편의 구분은 1시간, 30분, 20분으로 한다.
- ※ 공연카달로그 및 확인서 / 관련증빙 ※ 순회공연은 1회에 한하여 70%만 인정
- ※ 공인된 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문화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 포함)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무용 분야	-공인된 세계적 무용단에서 주연공연, 안무, 연출	300	200	*공인된 국제적 무용단은 별도로 정한다.
	-공인된 국내외 무용단에서 주역/안무/연출 -공인된 공연장에서 개인발표회, 공인된 국내외 행사 단체지도(기획/안무/연출)	200		*연출 및 안무 : 프로그램전체참여 *공연시간 : 최소 40분이상
	-공인된 국내외 수상제도를 택하는 대회에서 공로상/특별상/지도자상/안무상/작품상 수상 -공인된 국내외 공연에서 특별출연/찬조출연/독무출연, 공인된 공연장에서 개인공연 안무/연출/주역	100		
	-공인된 국내외 공연에서 조안무/조연출 -공인된 국내외 공연에서 군무출연	40		*단체전의 합산평균 연간 상한선 : 200점 *공인된 국내외의 단체전은 별도로 정한다.
체육 분야	-공인된 세계적 대회에서 입상 -공인된 국제적 수상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회에서의 입상	300	200	*공인된 세계적·국제적 대회는 별도로 정한다.
	-국제적 공인된 대회에 지도자 참가 및 출전	200		
	-공인된 국내 대회(지도자 참가)에서의 입상	100		
	-공인된 국내 대회(지도자 참가)에 지도자 참가	40		*공인된 국내대회는 별도로 정한다.

- ※ 무용분야 공연카달로그 및 확인서 증빙 ※ 순회공연은 1회에 한하여 70%만 인정
- ※ 무용분야 공연의 경우 1공연 1작품 중 상위점수만 인정
- ※ 공인된 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문화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 포함)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

[별표 4] 교원 연구업적평가항목 및 배점표(봉사부분: 계열공통)

평가항목기준		배점	통합	비고		
교내 활동	보직 및 위원회	대학원장, 처장	2.5	70	*검직:상위보직만 인정 *1개월 기준 *2개위원회 위원 인정 *위원장·당연직위원 제외	
		부처장, 실장, 부속기관장, 사업단장	2			
		학부장	1.5			
		대학원·학부전공주임교수,학과장,책임교수	1			
		위원회(대학평의원회 포함) 위원	0.5			
o 교외지원사업 및 교내프로젝트(학교발전 TF팀 및 기타) 참여 -교외 지원사업 참여 : 탈락시 3점, 1천만원이하 5점, 1천만원이상 10점, 5천만원이상 15점, 1억원이상 20점, 5억원이상 30점 -교내 프로젝트 참여 : 6개월 이하 3점, 6개월 이상 7점		30				
일반 행정업무 협조성 및 출퇴근상황(주 4일 근무기준/방학제외)		20		*학기당 10점		
수범 사항	학교 행사 참여도 : 학기당 10점		20	*기획조정처확인 *평가주기별 5등급 구분		
상벌 사항	국가 상훈법에 의한 포상 및 표창, 법인 이사장 표창		60	가·감점	*교원징계위원회의결 *1회 감점임.	
	법인 이사장 공로패·감사패, 총장 표창		40			
	지방자치단체 포상 및 표창, 총장 공로패·감사패		20			
	징 (법 인) 계	경고	-5			
		시말서	-10			
경징계 : 감봉, 견책		-15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		-30				
학술 단 체 활 동	국 외	국제학술단체(학회/협회) 임원(위원 및 간사포함), 전국규모 학술 단체장	60		*건당 15점	
		국제학술회의(학술대회) 진행(좌장/토론자/사회자/분과위원장)				
	국 내	국내학술회의(학술대회) 진행(좌장/토론자/사회자/분과위원장)				*건당 10점
		전국학술(학회/협회) 단체장, 전국규모 학술단체 회장, 회장단(회장,부회장,감사,고문,상임이사,지부장,간사(총무)) 이사				*회장10, 회장단8, 이사6 *사단·재단법인 인정
지방학술(학회, 협회) 단체 회장, 회장단(회장,부회장,감사,고문,상임이사,지부장,간사(총무)) 이사				*회장6, 회장단4, 이사2 *사단·재단법인 인정		
대외 활동	-국제기구 위원, 국가위원(자문/평가/심사/정책)		50		* 건당 10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국규모 각종단체(교육·사회·문화·예술·체육 등), 산업체 등이 위촉하는 위원(정책·고문·자문·평가·심사 등) 및 간사 -기고·논단·방송진행 등의 방송활동					
	-국가고시, 지자체, 공공기관, 자격경정 주관기관, 산업체 등이 실시하는 시험 출제·채점·감독 위원 -공공단체 초청강의, 외부특강, 산업체 교육,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봉사와 관련한 공훈 및 수상 등					*건당 5점 *산학연협약체결은 당해 연도만 인정
	-자매결연, 산·학·연 협약체결(산학협력단 확인) 및 추진실적 포함					

※ 상벌사항 통합적용 200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적용한다.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

[별표 5] 교원 재임용, 승진업적평가항목 및 배점표<개정 2013.12.4>

평가항목기준			배점	총합	비고	
업적평가	교육업적	별표1 교육부분 평가 준용	200	600		
	연구업적	별표2·3 연구부분 평가 준용	200			
	봉사업적	별표4 봉사부분 평가 준용	200			
기여도평가	개인평가	장학 및 발전기금 유치	50,000원⇒1점	60	150	
		학교발전 기여도(총장평가)		50		학기당 25점
		학사행정 기여도(교학지원처장평가)		20		학기당 10점
		지원사업 기여도(기획조정처장평가)		20		학기당 10점
	학과평가	신입생총원율	100%이상⇒100점, 90%이상⇒85점, 80%이상⇒70점, 70%이상⇒55점, 70%미만⇒40점	100	300	
		취업율	· 취업평가 부칙 활용	50		
		재학생총원율	90%이상⇒50점, 80%이상⇒43점, 70%이상⇒35점, 60%이상⇒27점, 60%미만⇒20점	50		
		중도탈락율	4.9%까지⇒50점, 9.9%까지⇒43점, 14.9%까지⇒35점, 19.9%까지⇒27점, 19.9%이상⇒20점	50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70%이상⇒50점, 60%이상⇒43점, 50%이상⇒35점, 40%이상⇒27점, 40%미만⇒20점	50		
	교양평가	입시활동값	5명⇒100점, 4명⇒85점, 3명⇒70점, 2명⇒55점, 1명⇒40점, -중도탈락일 경우 취득점수의 1/3감점	100	300	-최종등록기준 -교학지원처 확인
		비학점교육	50시간이상⇒100점, 40시간이상⇒85점, 30시간이상⇒70점, 20시간이상⇒55점, 10시간이상⇒40점	100		10인이상 1일2시간이내
		수업시수	15시간이상⇒100점, 13시간이상⇒80점, 11시간이상⇒60점, 9시간이상⇒40점, 6시간이상⇒30점, 6시간미만⇒20점	100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해당시수
	(학과가 없는 대학원)	신입생총원율	100%이상⇒100점, 90%이상⇒85점, 80%이상⇒70점, 70%이상⇒55점, 70%미만⇒40점	100	300	
		재학생총원율	90%이상⇒50점, 80%이상⇒43점, 70%이상⇒35점, 60%이상⇒27점, 60%미만⇒20점	50		
		중도탈락율	4.9%까지⇒50점, 9.9%까지⇒43점, 14.9%까지⇒35점, 19.9%까지⇒27점, 19.9%이상⇒20점	50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70%이상⇒50점, 60%이상⇒43점, 50%이상⇒35점, 40%이상⇒27점, 40%미만⇒20점	50			
비학점교육		50시간이상⇒50점, 40시간이상⇒43점, 30시간이상⇒35점, 20시간이상⇒27점, 10시간이상⇒20점	50			
배점 총점			1,050			

- ※ 신설학과 취업률은 각 항목별 학과 취득점수 중 최저점수 부여
- ※ 교양평가의 입시활동값은 “입시홍보위원회 활동 시 50%인정 (교학지원처 확인)
- ※ 취업률은 취업평가 [첨부1]을 활용